



제437회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유치장 · 구치소 유치의 잠정조치기간 연장 〉

■ 양부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420호)

2026. 7.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박 혜 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내용	3
2. 잠정조치의 종류와 그 기간	4
3. 유치장·구치소 유치의 잠정조치기간 연장	6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양부남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2025. 8. 27.
3. 회 부 일: 2025. 8.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구, 의정부, 울산, 대전, 서울 등 전국에서 스토킹 피해로 죽임을 당하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는 끔찍한 사건이 계속하여 발생하였고, 스토킹 범죄 112신고 건수도 2021년 1만 4,509건에서 2024년 3만 1,947건으로 3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관계성 범죄는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일어나며 피해대상이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라는 점에서 피해가 반복될 경우 폭력행위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져 되돌릴 수 없게 되므로 무엇보다 피해의 예방을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격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이에 현행법은 스토킹 범죄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같은 유형의 관계성 범죄인 가정폭력행위자를 처벌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가해자의 유치 기간을 한차례

연장을 통하여 2개월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스토킹 범죄를 일으킨 자에 대해서도 스토킹 범죄의 원활한 조사와 심리 및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최대 2개월까지 유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도 피해자에 대한 접근이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것임(안 제9조).

I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스톡킹행위자에 대하여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를 한 경우 그 잠정조치기간을 1차례에 한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7항).

현행	개정안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 조치) ① ~ ⑥ (생략)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 조치)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3개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⑦ ----- ----- ----- ----- -----. ----- ----- ----- ----- ----- -----잠정조치는----- ---차례만,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는 한 차례만-- -기간의-----.

2. 잠정조치의 종류와 그 기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의 잠정조치는 스톱킹범죄의 재발(再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동법상의 피해자보호조치 중 하나임.¹⁾

□ 잠정조치는 스톱킹범죄의 재발 우려 등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이루어짐.

○ 검사는 스톱킹범죄의 재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스톱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결정으로 잠정조치를 할 수 있음(제8조, 제9조제1항).²⁾

1) 스톱킹처벌법은 잠정조치 외에도 응급조치나 긴급응급조치 등의 피해자보호조치를 인정하고 있음.
스토킹처벌법

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톱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톱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톱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서면경고
2. 스톱킹행위자와 피해자들의 분리 및 범죄수사
3. 피해자들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4.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톱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톱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톱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톱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톱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스톱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톱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스톱킹행위의 요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이 포함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스톱킹처벌법

제8조(잠정조치의 청구) ①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 잠정조치의 종류에는 피해자와 그 동거인 및 가족 등에 대한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이 포함됨(제9조제1항).³⁾

- 서로 다른 종류의 잠정조치는 병과할 수 있고, 잠정조치기간의 상한은 각종 접근 금지와 전자장치 부착의 경우 3개월, 유치장·구치소 유치는 1개월인데, 접근 금지와 전자장치 부착의 경우 필요하다면 2차례에 한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제9조제2항·제7항).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 4.(생략)

3) 스토킹처벌법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4) 스토킹처벌법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② 제1항 각 호의 잠정조치는 병과(併科)할 수 있다.

⑦ 제1항제2호(註: 100m 이내 접근 금지)·제3호(註: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및 제3호의2(註: 전자장치 부착)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3개월, 같은 항 제4호(註: 유치장·구치소 유치)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3. 유치장·구치소 유치의 잠정조치기간 연장

가. 검토의견

- 안 제9조제7항은 잠정조치로 유치장·구치소 유치가 이루어진 경우 그 잠정조치기간을 1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대 2개월까지 스토킹행위자를 유치장·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유치장·구치소 유치의 기간 상한을 1개월로 규정하고 있으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은 임시조치로 이루어진 유치장·구치소 유치의 기간 상한을 각각 2개월, 4개월로 규정하고 있음.⁵⁾

5)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 ~ 4. (생략)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6. (생략)

② ~ ④ (생략)

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임시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는 두 차례만,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임시조치는 한 차례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 ⑫ (생략)

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①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 6. (생략)
7.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② · ③ (생략)

④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는 두 차례만,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는 한 차례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가정폭력처벌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임시조치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부과되는 피해자보호조치로서, 범죄의 재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스토킹처벌법의 잠정조치와 유사함.

< 유치장·구치소 유치의 기간 비교 >

구 분	최초 기간(상한)	기간 연장		전체 기간(상한)
		연장 횟수(상한)	연장 기간(상한)	
잠정조치(스토킹처벌법)	1개월	-	-	1개월
임시조치(가정폭력처벌법)	1개월	1회	1개월	2개월
임시조치(아동학대처벌법)	2개월	1회	2개월	4개월

□ 안 제9조제7항과 같이 유치장·구치소 유치의 기간 상한을 상향할 경우 추가적인 스토킹행위의 억지와 피해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유치장·구치소 유치는 형사처벌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대상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라는 점, 가정폭력처벌법 및 아동학대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은 그 규율대상이나 사건처리절차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스토킹사건은 가정폭력·아동학대범죄 사건과 달리 가족관계·보호관계 등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가정폭력처벌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은 스토킹처벌법에는 없는 보호사건절차도 규정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073
